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2호

「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22일

상주시의회장



조례안 예고

1. 조례명

- 가.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나.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
- 다.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

2. 조례별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

가.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) 제정이유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15조 및 「문화재보호기금법」 제5조에 따라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·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가)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) 문화재지킴이와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다)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수립(안 제3조 및 제4조)
- 라)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재지킴이 지원 · 홍보 · 교육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
- 마) 포상(안 제9조)

나.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

1) 제정이유

영유아보육법」 제6조 및 「공유재산법」 제19조 등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「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정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가) 조례의 목적 및 책임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)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의 명확성 부여(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)
- 다) 국공립어린이집 운영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- 라) 위탁기간 및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· 감독(안 제12조 및 제13조)
- 마) 비용의 보조 및 지도 · 감독(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)
- 바) 교육 · 포상 및 준용규정(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)

다. 싱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

1) 제정이유

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며, 건설업체의 임금체불 방지와 적기 임금 지급을 통한 관내 지역건설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 및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2) 주요내용

- 가)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) 조례의 정의(안 제2조)
- 다) 적용범위 및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(안 제3조 및 제4조)
- 라) 신고센터의 설치 ·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(안 제5조 및 제6조)
- 마) 조례 내용 통지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28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· 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argentina111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